

○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5 - 1122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-1058호(2025.8.21.)로 지정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5일

성동구청장

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면적(km ²)	비 고
성동구	성동구 전체 지역	14.61	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
○ 허가대상자 : 외국인 등 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)

○ 허가대상 용도 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※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5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

